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5. 6. 13.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546호로 2025년 5월 30일 이규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화학사고 발생 시의 구민 고지(안 제6조)
- 라.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5. 6. 3.~2025. 6. 1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잇따른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고의 예방, 대응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이 「화학물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전부개정(2013. 6. 4. 개정, 2015. 1. 1. 시행)되었으며,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음.
 - 또한, 기본계획과 별도로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법의 일부개정(2016. 5. 29. 개정, 2017. 5. 30. 시행)을 통해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
- 한편, 영등포구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현황은 2024년 6월 기준 285개로 파악됨에 따라,
 - 영등포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구민에게 사고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도록 하여,

입법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책무)제1항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제2항은 법 제5조에서 부여한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에 근거 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안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는 법 제6조제5항 및 법 제7조의2제1호에 근거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7조에서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서울특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한 조항으로 판단됨.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 안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는 법 제23조의4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구민 고지)는 사고 발생 시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사고 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즉시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보 신뢰도가 낮은 경우 고지를 유보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함으로써 정보전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부터 기능, 구성, 운영, 의견 청취 및 기밀 유지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들로,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의 전문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교육·훈련)는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 및 대응계획에 따른 훈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재정지원)는 법 제4조제2항, 제7조의2제4호 및 제11조의2제7항에 근거하여 관련 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영등포구는 2024년 6월 기준 285개소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지역 내 화학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바,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고 발생 시 구민에게 신속한 정보고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참고 자료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제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 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